



유럽 보험상품판매지침(IDD) 개정

정인영 연구원

■ 2015년 12월 14일, 유럽위원회(European Council)는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험상품 판매 관련 규정을 기존 「보험모집지침(IMD)」에서 「보험상품판매지침(IDD)」으로 대체함.¹⁾

- IMD 제도하에서 EU 역내 규제 불균형,²⁾ 불충분한 공시,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영업행위 규제 미흡, 보험모집인(intermediaries)과 기타 판매채널 간 불공정 경쟁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.³⁾
-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위원회는 「보험상품판매지침(IDD)」을 마련하였고, EU 회원국들은 2년 내에 본 지침에 포함된 조항들을 자국 법안에 반영해야 함.⁴⁾

■ IDD의 새로운 개정의 주요내용은 판매자 범위의 확대, 공시 강화, 판매자 전문성 요건기준 강화 등임.

- 첫째, 기존 지침(IMD)이 보험모집인만을 대상으로 했다면, 새로운 지침(IDD)은 인가보험사업자(undertakings)까지 포함되었다는 측면에서 적용 범위가 확대됨.⁵⁾
- 둘째,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보험계약 체결 전에 고객에 대한 판매자의 설명의무를 강화함.
- 셋째,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개선을 위해 판매자 전문성 요건을 강화함.

■ 개정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.

- 판매자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의 모집인뿐만 아니라 직판채널, 보험상품비교사이트, 부업보험모집인(ancillary insurance intermediaries) 등을 포함함.
 - 보험상품비교사이트란 가격 및 상품비교를 포함하여 웹사이트나 미디어를 통해 소비자가 선택

1) IMD는 Insurance Mediation Directive, IDD는 Insurance Distribution Directive의 약자임.

2) EU 역내 시장에서 기존 IMD를 자국법화 하는 과정상 각 국가 간 규제 강도의 차이가 확대되었음.

3) Domaradzka(2012), "The Revision of the Insurance Mediation Rules at EU Level and its Impact on Consumer Protection", EIPAScope.

4) 유럽연합은 회원국들 간 규제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이 취해야 할 최소한의 규제조화를 지향하고 있음.

5) 이에 따라 기존 지침에서 사용된 모집(mediation)이라는 용어가 판매(distribution)라는 용어로 변경됨.

한 기준에 따라 한 개 이상의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.

- 부업보험모집인⁶⁾이란 주 업무가 보험판매가 아니며,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상호 보완적인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자를 의미하며, 여행사, 렌터카회사 등이 이에 해당함.

● 공시 강화와 관련하여 보험모집과정에서 판매자와 고객 간 정보비대칭 문제로 인한 이해상충문제⁷⁾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판매자 보수의 규모 및 성격에 대해 사전에 공시하도록 함.

- 특히 교차판매(cross-selling)⁸⁾ 시에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각 상품을 구분하여 소개하고, 각 상품의 비용 및 수수료 등에 관해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함.

● 판매자의 전문성 강화 조치로 보험상품 판매자는 판매상품 특성, 판매자 유형, 보험회사가 판매자에게 부여한 역할 등을 고려하여 연간 15시간 이상의 전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.

■ 특히, 투자형 보험상품(insurance-based investment products)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적합성(suitability) 및 적정성(appropriateness) 원칙을 적용토록 함.

● 적합성 원칙이란 판매자가 고객에게 투자형 보험상품을 권유할 경우 지켜야 하는 원칙임.

- 고객의 재무상황(손실부담능력, ability to bear loss), 투자목적(위험성향, risk tolerance) 등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해당 상품의 위험을 고지한 후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여야 함.

● 적정성 원칙이란 판매자가 권유 없이 투자형 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지켜야 하는 원칙임.

- 고객이 구매를 원하는 경우 해당 상품유형에 대한 고객의 투자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요청하고, 해당 상품이 적정한지 판단하여야 함.

■ 이러한 조치는 EU 시장통합(market integration) 촉진, 판매자 간 공정경쟁 유도, 보험계약자 보호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 [kiri](#)

6) 우리나라에서는 단종보험모집인으로 불리움.

7) 판매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상품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므로,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이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.

8) 여기서 교차판매란 보험상품 판매자가 보험상품과 보험상품이 아닌 타 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것을 의미함.